

제29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본회의(2020. 12. 17.)에서 의결된 고흥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2020년 12월 18일

고흥군의회 의장 송 영



규칙 제2020-30호

## 고흥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

고흥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 제5조에 따라 고흥군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 지출을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 “업무추진비”란 고흥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의장, 부의장, 상임위원장, 예산·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업무추진비를 말한다
2. “의원”이란 고흥군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.
3. “회계관계공무원”이란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고흥군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.

**제3조(업무추진비 사용·집행)**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「공직선거법」, 「지방의

회의원 행동강령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·집행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업무추진비 사용제한)**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·집행할 수 없다.

1.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
2. 심야시간(23시 이후), 휴일,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. 다만,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3. 친목회, 동우회·동호회, 시민·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
4.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
5.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 간 식사
6.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
7.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

**제5조(예산집행 자료 작성)**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)**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 일시, 집행목적, 대상 인원수, 금액, 결제방법(신용카드, 현금 등)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정보공개 범위)**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등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.

**제8조(교육 및 점검 등)** 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③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·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

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.

제9조(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) 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,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